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4. 11. 1.

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412호로 2024년 10월 14일 전승관 의원 외 6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 기한 등을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토론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의회 개최 토론회의 주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의회 토론회의 주최, 주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청 및 승인(안 제4조)

나. 진행(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의회에서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등의 운영에 있어 신청서 제출기한 및 의장의 승인여부 서면 통보기한,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 공고기간 등을 단축하고, 행사의 주체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4조제1항에서는 토론회 등의 개최신청서 제출기한 규정을 3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의장의 승인여부 서면 통보기한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제2항 규정에서 승인하였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 공고기간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에서 3일로 변경하였음.
- 안 제6조는 토론회 등의 주관이 위원회일 경우는 위원장이, 의원일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대표가 되어 행사 주재 및 진행하는 규정을 신설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토론회 등의 개최신청서 제출기한, 의장의 승인여부 서면 통보기한 및 홈페이지 공고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토론회 개최를 통해 토론 문화를

발전시키고 토론회의 주관은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분하여 원활한
토론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토론회 등의 신청절차를 볼 때 토론회 개최신청부터 홈페이지
공지 공고기간까지의 절차를 수정 및 운영하여도 토론회
등의 개최 준비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토론회
등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1조1)에
서 영등포구의회가 각종 토론회 등의 개최로 명시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개최는 토론회 등의
행사 전체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주관은 해당 토론회 등을 실제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일컬음.
따라서 위원회 주관은 위원장이 주재를, 의원 주관은
해당 의원이 주재함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토론회 개최와 토론회 주관
을 명확히 구분하여 현안사항 해결 등에 있어 보다 내실
화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세미나,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